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 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함.(안 제8조 및 별 표)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cm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도 제외 함.(안 제9조제2호 삭제)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을 월평균 한도액 산정 시 전국 을 기준으로 함.(안 제1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봉투규격이 이 규정대로 라면 모든 업	○ 모든 업소가 대상이며 폐기물 투기
소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형식의 제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사이즈에 대
이 아니라 단지 사이즈에 대한 규정인지?	한 규정사항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3호
의결	2005. 7. 15
년월일	(제120회)

제출년월일 : 2005. 7. 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3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화함.(안 제8조 및 별표)

나.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cm 이하

- 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도 제외 함.(안 제9조제2호 삭제)
- 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 능하도록 함.(안 제14조)
- 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을 월평균 한도액 산정 시전국을 기준으로 함.(안 제15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입금하거나 지역상 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월평균 50만원"을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u>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u>(제2조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1차	2차	3차위반	포상
부 과 대 상	위반	1	(이후)	금액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1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 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 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 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 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과 태 료				
- II II	1차	2차	3차위반	포상
부 과 대 상			(이후)	금액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1 L	(117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1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 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1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1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 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신・구조문대비표

		현	č	행				개	정	인	<u> </u>	
		회용품시										
	베내 <u>안</u> 급 <u>조례</u>	<u> 과태료</u>	<u>루과 및 전</u>	<u> 1 고 포 </u>	<u>[금시</u>		<u>내안</u> 지급			루 <u>라</u>	<u>및 1</u>	<u> 1 고포</u>
	a) (> ()	ا المحال	ا المالات ا	zl ull	പ പ	-1) O -7	()]-	ر المن	م اے ما	J 7]	വി ലി	7] V]
]고에 ^의 과태료 ·										
		<u>보고</u>										
		부과는 }상 1차										
		<u>과한다.</u>	z } -\					/ 됬 케	ગો ગો	- O \		
	∠) • (-)	③) (생 및	千)				• ③	(연 앵	4 包	一一		
ス]고포상i					:(신고	1포상	금제의	외대/	상) -	
		1회용품 대하여 /										
	_	가음 각호 기기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니	<u> </u>
		사항 신고 금을 지급										·
	1. (생	략)				1.	(현행	과 깉	음)			
		·통산업빌 규정에				_<	삭	제 >	—			
		• 쇼핑센1										
	및	기타 대	규모점포	트와 통	계법							

현 행	개 정 안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u>월평</u> <u>균 50만원</u> 을 초과한 경우	3 <u>전국</u> 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각 호의 어느 하나</u>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 지급	글기준	(제2조	관련)				
			(단위	:만원)						(단위	:만원)
과 태 료	<u>.</u>					과	태 료				
부과대상	1차	2차	3차	포상 금액	н -	•		1차	2차	3차	포상 금액
	위반	위반	위반	П ¬		무대상 		위반	위반	위반	
1.1회용품을 사용 또는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 를 설치·운영하지 아니											
한 때(법 제10조)											
<u>가.</u> 식품접객업소,					1						
집단급식소를 경영											
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u>(1)</u> 객실과 객석면적이					<u> 가.</u>						
333제곱미터 이상인	100	000	000	00				50	100	000	10
식품접객업소 또는	100	<u>200</u>	300	<u>20</u>				<u>50</u>	<u>100</u>	200	10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2) 객실과 객석면적이					나						
100제곱미터 이상					<u> </u>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u>50</u>	100	<u>200</u>	<u>10</u>				<u>30</u>	<u>50</u>	100	5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											
(3) 객실과 객석면적이					<u>다.</u>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000	-	100					10	00		
식품접객업소 또는	<u>30</u>	<u>50</u>	100	3				<u>10</u>	<u>30</u>	<u>50</u>	3
상시 1회 100인 이											
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百七日行年											

현		행			개 정 안					
과 태 호	i L			포상	과 태 료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액	부과대상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위반	포상 금액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 의 집단급식소	<u>10</u>	<u>30</u>	<u>50</u>	1	라 <u>5</u> <u>10</u> <u>30</u>	1				
<u>나.</u>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이상)를 경 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u>2.</u> プナ					
(1)석필 300 필 약 8 円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u>20</u>	5 <u>0</u>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 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 적 300평방미터 이하 의 목욕장인 경우	<u>50</u>	100	200	<u>10</u>	<u> </u>	<u>5</u>				
(<u>3)</u>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u>30</u>	<u>50</u>	100	3	<u>다</u> <u>10</u> <u>30</u> <u>50</u>	3				
다.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터·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 자가 1회용품을 무상 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 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배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300	300	300	<u>30</u>	3. 유통산업발전법 제2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00 200 300	<u>15</u>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_			포상	과 태 료	포상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액		금액
라.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u>사업장</u> 중 백화점· <u>대형점</u> ·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u>재활용제품의</u>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u>300</u>	<u>300</u>	300	<u>30</u>	4 대규모점포 전문점·할인점··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명을 매장을	<u>15</u>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 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 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u>5.</u>	
(1)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u>100</u>	<u>200</u>	<u>300</u>	<u>20</u>	<u>7</u> ት <u>30</u> <u>50</u> <u>100</u>	<u>5</u>
(2)매장면적이 165제곱 미터이상 1,000제곱 미터 미만인 도·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 업자	<u>50</u>	100	200	<u>10</u>	<u>나</u>	<u>3</u>
(3)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이상 165제곱 미터미만인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	<u>30</u>	<u>50</u>	100	1	<u>다</u> <u>5 10 30</u>	1

현		행					개	ろ	}	안		
과 태 5	포상		과 태 료						포상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액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u> </u>	6 		 				
(<u>1)</u> 매장면적이 333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u>100</u>	<u>200</u>	<u>300</u>	<u>20</u>		<u>가</u> . 			<u>50</u>	<u>100</u>	200	<u>10</u>
(2)매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333제곱 미터 미만의 경우	<u>50</u>	<u>100</u>	200	<u>10</u>		<u>나</u> .		 	<u>30</u>	<u>50</u>	100	<u>5</u>
(3) 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이상 100제곱미 터 미만의 경우	<u>30</u>	<u>50</u>	100	3		<u>다.</u>		 	<u>10</u>	<u>30</u>	<u>50</u>	3
(<u>4)</u> 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	<u>10</u>	<u>30</u>	<u>50</u>	1		<u>라</u> .			<u>5</u>	<u>10</u>	<u>30</u>	1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 업, 교육서비스업 중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7						
(1) 매장면적이 1,000 제곱미터이상인 사 업자	100	200	300	20		<u>가.</u> 			<u>50</u>	100	200	10

현 현			기) 7	정	안					
과 태 5	포상		과 태 료					포상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액		부과대성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액
(2) 매장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50</u>	100	200	<u>10</u>	나	<u>.</u>		<u>30</u>	<u>50</u>	100	5
(3)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이상 165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	<u>30</u>	<u>50</u>	100	3	다			<u>10</u>	<u>30</u>	<u>50</u>	3
(<u>4</u>)매장면적이 33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	<u>10</u>	30	<u>50</u>	1	<u>라</u>	<u>.</u>		<u>5</u>	<u>10</u>	30	1
아. 운동장, 체육관, 종 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 최하는 자가 1회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u>20</u>	8.			<u>50</u>	100	200	10

Т